

공유재산 취득 동의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시 및 제안자 : 1992. 5. 25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2. 5. 26

다. 상정일자 : 1992. 5. 26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별첨안 참조

나. 주요골자 : 별첨안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별첨 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여러가지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음

5.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 습

나. 찬성토론 토론자 : 한정동 위원

내 용 : 인구급증으로 동업무가 폭주하므로 하루빨리 분동하여 주민들이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임

표결결과 : 재석위원 11명 찬성 10명

기권 1명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처리

공유재산 취득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

1992. 5. 25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사하보건소 부지 1,652.9㎡ 7억과 분동 예정동사 신평2동사 대지 660㎡, 건평 160평 2억 천만원과 하단2동사 대지 427.3㎡, 건평 160평 1억원, 그리고 다대동 3억 5천만원 총매입비 21억 천만원중에서 금회 추정되는 13억6천만원이며 동사신축비는 6억7천2백만원으로써 구민 보건시설의 일반의료화 추세와 인구급증으로 인한 과대동 분동에 대비하는 신동사 부지 매입과 건물신축입니다.

취득재원중 9억5천만원은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취득은 인구급증과 날로 늘어나는 동업무 폭주로 주민의 불편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